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243~274 한국법철학회 2014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 **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의 예에서

이소영***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의 아우슈비츠' '한국의 홀로코스트'로 회자되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예로 하여 법이 부착한 '부랑인' 기표와 그 효과에 관하여 다룬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1975년 제정)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대한 지배적 재현을 구성하였으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가 본고에서 제기하는 고유한 연구질문이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시설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이 문제시되었던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당시 언론보도의 초점이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는 데 대한 의문에서 출발

*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5).

** 본고는 한국법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2014/06/20,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표하였던 초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발표를 경청해주시고 생산적인 조언과 비평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RICH) HK연구교수.

**** 투고일자 2014년 7월 10일, 심사일자 2014년 8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8월 13일.

하였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된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무엇을 표상하였는가? 또 부랑인 시설수용을 규정한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각각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왔는가? 본고에서는 먼저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의 언론보도, 사설 · 논평 · 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였으며, '자활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26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이 부착하였던 그 '부랑인' 기표가 피해자 기억의 재현에 있어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지 다루고자 하였다. 즉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그러한 부랑인 기표(의 효과)가 피해자의 현재 목소리에 각인되어 "부랑인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이었다" "성실한 이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로써 비부랑인 수용자를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를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피해자로 각각 새겨넣음(mark)으로써, 부랑인을 벌거벗은 생명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 대신 비부랑인까지 부랑인 범주에 밀어넣은 '권력의 현현으로서의 폭력'에만 방점이 찍히게 만드는 담론 효과를 분석하였다.

"미학적이건 정치적이건 한 사람이 지닌 감수성의 질은 그 사람의 현재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 가름될 것만 같다."[1]

I. 들어가며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2] 많은 경우 기억에 대한 법의 개입은 진실

1) 황현산, 밤은 선생이다(난다, 2013), 12면.

2) '기억과 법(memory and law)' 관련 연구들은 과거청산 문제만이 아니라 증거능력이나 증언의 효력 문제, 특히 아동 성폭력피해자의 기억 재현과 관련하여서도

의 규명과 정의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청산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개입은 공식기억의 흠결을 드러내어 교정하고 개인적·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 공적 과정을 추동하는 사회적 동인이 되는 것이 인권 감수성에서 발로하는 공감(empathy)이다. 공감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로 다시 들어가, 어두운 시간 안에 묻혀 있던 문제들에 닿아 분노하고 연민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청하게 할 것이다. 이는 과거와의 조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억의 "두터운 현재"를 구성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자가 그러한 공감의 장력으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당시의 보도자료들을 조우하려던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부랑인 보호시설에서 12년 동안 발생하였던 감금과 폭력, 노동착취와 국가보조금 착복 등이 문제시된 이 사건에 관한 기사들에서 문제의 초점은 '부랑인 아닌 이들도 억울하게 수용'에 일관되게 맞추어져 있었다. 여기서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그렇다면 무엇을 표상하는가? 이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연구질문이었다. 아울러 자활을 통하여 노동시장으로 편입되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공적 공간 바깥으로 배제되어야 할 대상[3]으로 부랑인을 주체화하는 매커니즘이 형제복지원 사건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며 어떻게 부랑인이라는 기표에 각인되었으며, 어떠한 문화적·정치적·사법적 효과를 만들어내었고, 그 기억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또한 형제복지원 기억이 과거사 진실규명과 피해해결의 대상으로 다시금 소환된 오늘날, 피해자의 목소리와 기억의 재현에 그와 같은 기표(의 효과)가 각인되어 있는 양상을 읽어내고 싶었다. 부랑인 시설수용과 구별짓기의 정치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소 찾아볼 수 있지만,[4] 내무부훈령 제410호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부랑인에 대

이루어지고 있다. 그때의 '기억에 대한 법의 개입'은 규명과 회복이 아닌 실체적 진실 확보의 기술 차원에서 논의된다.

3) 정수남, "'잉여인간', 통치성, 감정아비투스," 한국사회학회 2013 전기 사회학대회 논문집(2013), 140면.

4)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한국사연구(제164호, 2014);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사회와 역사(제89집, 2011); 김아림,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대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제82호, 2011) 참조; 또한 2013

한 지배적 재현을 구성하며, 그 지배적 재현이 어떻게 다시금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기억에 각인되는가는 본고가 제기하는 고유한 문제의식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법을 통한 과거청산에서 기억의 재현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본 연구자의 이해를 밝히고[II],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 당시의 관련법제와 언론보도, 사건조사보고서, 그리고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의 기표가 무엇을 표상했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논의한 다음[III], 형제복지원이 사회적 기억의 문제로 소환된 최근, 과거청산과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부랑인의 기표가 주체의 기억에 어떻게 각인되어 내러티브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IV] "두터운 현재"를 구성하는 분노와 연민의 감수성을 다시금 다르게 고민하는 실마리를 마련해보려 하였다[V].

부랑인에 대한 1970-80년대의 지배적 재현을 다루면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택하였던 보도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구축되어 있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었으며, 형제복지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1987년 2월의 경우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여타 신문보도자료 및 KBS뉴스, MBC뉴스데스크 등 영상보도자료, 그리고 "말", "월간조선", "월간 엔터프라이즈" 등 주간·월간지 기사 또한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본고는 관계자들 다수가 생존해 있는 비교적 근래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관계자 이름을 김OO, 이OO 형식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둔다. 인용문헌이나 언론보도에 실명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그렇게 바꾸어 표기하였다. 다만 관계자가 증언이나 수기,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와 주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실명을 밝히는 것이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추정하여 실명을 적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는 본 연구자의 직접적인 구술수집 작업이 아닌 증언대회 녹화자료, 증언자료집, 수기, 기자회견, 인터뷰 컷 등 재현자료들에 의거하여 피해자 목소리를 다루었음에 양해를 구한다. 흙 속에 묻혀 있는 이들이 아닌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피해생존자들이 갓 사회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한 현시점에, 그 상처의 발화를 분석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는 대

년 11월 22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시설'의 탄생. 형제복지원 사건의 배경"(임덕영·박숙경)과 "형제복지원, 혹은 문화적 과정으로서 야만"(정정훈)에서도 70-80년대 부랑인 수용정책에서의 배제와 구별짓기의 정치사회학이 논의되었다.

단히 조심스러워야 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1987년 당시 지배적 재현에 등장하였던 '정상인도 억울하게 갇혔다'는 문제의식 배후에 놓인 부랑인/정상인의 구별짓기를 문제화하고, 그 구별짓기가 행위자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못하게 하는가의 문제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 보았다. 피해자 목소리의 내러티브화와 과거청산 특별법 제정의 법담론에서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은, 시간을 두고 피해생존자들과 라포를 형성해가며 진행해갈 후속작업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Ⅱ. '법을 통한 과거청산'과 기억의 재현

1. 기억에 개입하는 법

과거청산은 보통 과거 (공)권력에 의해 행해진 부정의가 인정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는 상태에서 역사적 진실을 복원하고, 과거의 상흔들을 치유하여 '다시' '올바른' 역사로 이행해가기 위한 노력이라 규정된다.[5] 그리고 그 노력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 기념의 제도화, 역사왜곡 처벌 등 사법적 장치들의 도움을 받아 행하여진다. 법은 청산의 이름으로 기억을 교정하고, 교정된 기억을 공고화하는 한편, 공고화한 기억의 왜곡을 규제하는 데 개입하는 것이다.[6] 식민경험과 전쟁, 독재의 집단기억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도 i)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강제이주, 군위안부, ii)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과 강간, 그리고 iii) 군사정권 하에서의 간첩조작사건, 고문, 의문사, 민주화항쟁 등이 그 대상이 되어 왔다.

누구의 어떤 기억이 어떻게 강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망각·왜곡되었는지를 둘러싸고, 과거청산의 장치들이 만들어지는 인식틀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이것이 올바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잣대들을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5) 이재승, "과거청산과 인권," 민주법학(제24호, 2003), 16면; 양현아,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민주법학(제33호, 2007), 136면.
6) 이소영, "기억의 규제와 '규제를 통한 기억하기'?: 홀로코스트 부정 규제 법제와 사회적 기억의 구성," 법학연구(제21권 제4호, 2013), 406면.

justice)[7]라 부른다.[8] 여기서 기억은 단순히 과거 사건의 저장고가 아니라 구성적 상상력의 진행과정이며,[9] 사회적 기억은 잊혔거나 희미해진 사실관계를 복원하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기억[10]이 선별 혹은 배제되고 억압·왜곡되는 과정에 개입하는 정치적 이해들의 역학관계들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한 역학관계는 공식기억이 대항기억들을 은폐하는 층위에서도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대항기억을 다시금 정상화하고 공식역사 내부로 호명하는 층위, 요컨대 그 이행기 정의가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본고가 '법을 통한 과거청산'에 대하여 갖는 전제이다.[11] 그리고 이때 피해자의 목소리와 기억의 재현은 재판과정과 법제정 운동에서 중요한 수행적(performative) 역할을 한다.

사실 기억의 재현은 피해자/피의자 증언과 증거능력, 심문과 수사 등 법조 영역에 다양한 접점을 가져왔지만, 재판에서 기억의 재현에 대해 갖는 전통적 관심은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증거자료의 확보와 "재판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생생한 언어의 채집"이라는 경험주의적 차원에 머물러왔다고 평가된

7) 이에 대해 자세히는 D. Shelton, *The Encyclopedia of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Volume III* (Macmillan Reference USA, 2004), 1045-1047면; 이 개념을 소개한 국내연구로는 이재승, "이행기의 정의," 법과 사회(제22호, 2002) 참조.

8) 본고에서는 더욱 정의로운 공식역사로 '이행'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기억은 과거의 재생이 아닌 현재적인 재현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비고정적인 정의라는 의미로 이행기 정의 개념을 이해한다. 한편 과거청산은 과거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종결되는 채무관계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과제들이 경합 중인 상태라는 점에서 "경합 중인 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김현숙, "경합중인 과거와 열린 미래," 사회와 역사(제61집, 2002) 참조.

9) R. Bernstein, "The Culture of Memory", History and Theory (제43권 제4호), 167-168면.

10) 이 개념은 알박스(Halbwachs)의 저작(기억의 사회적 맥락; 1925)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역사학에서 집단기억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전후 제3세대 및 4세대 아날학파 연구자들에 의해서였다. 집단기억은 사회적 창출과 보유, 교환, 전유 등 문화적 실천행위이자 그 실천에 의한 구성물로서, 그것이 조형되는 방향과 양식은 일의적으로 규정될 수 없이 유동적이고, 선택적이며 다양하다; J. Nerone, "Professional History and Social Memory," Communication(제11권, 1989), 92면 아래 참조.

11)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소영, "기억의 정치와 '법을 통한 과거청산' 담론 비판," 외법논집(제35권 제2호, 2011), 272-273면 참조.

다.[12] 구술이 진실의 요구에 따라 평가되고 증거규칙과 증거능력이 강조되면 '언어라는 수면 아래에 있는 언어'의 풍부함은 가려지기 쉽다.[13] 이는 법언어의 "관성과 객관성의 오만을 부지불식간에 찢고 들어오는 목소리"[14]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사적으로 규격화된 증언, 다시 말해 생애사에 담긴 일상적인 경험과 고통, 상실, 좌절과 분노의 감정을 배제적으로 배열해놓은 목소리가 되기 쉽다.[15]

2. 기억의 재현이 법에서 갖는 수행성

한편, 피해자의 목소리와 기억의 재현은 재판 증거로서만이 아니라 감정의 진폭을 자극하여 법의 조속한 집행을 촉진하고 법제정 운동에 불붙이는 인권 구제의 방안으로도 사용된다. 즉 시민사회의 인권 감수성에 닿아 i) 이미 '실정화된 인권'의 구제를 촉진하거나, ii) 여전히 '실정화되지 않은 인권'을 실정화하거나, 혹은 iii) 아직 '생성 중인 인권'을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다.[16]

그런데 이러한 수행성은 한편으로는 ―특히 i)과 ii)의 경우― 정형화(stereotype)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그려내고, 제도적 · 공동체적 서사 안에서 단선적으로 상처와 치유를 이해하고 논하게 만드는 위험을 갖기도 한다. 가령 기억연구자 골드버그(Goldberg)는 유럽적 주체의 자기반성에 골몰한 홀로

12) 양현아, "피해 증언의 생산과 '과거청산': '수지 김' 유족 증언을 중심으로," 민주법학(제33호, 2007), 138면.

13) D. Laub, "On Holocaust Testimony and its 'Reception' within its Own Frame as a Process of its Own Rights," History and Memory(제21권 제1호, 2009), 142면; R. Kennedy, "Stolen Generations of Testimony: Trauma, Historiography and the Question of 'Truth'," R. Perks(편), *The Oral History Reader* (Routeledge, 2006), 513면.

14) S. Friedländer, *The Years of Extermination* (HarperCollins, 2009), 16면.

15) 김무용, "과거청산 작업에서 진실말하기와 대항 내러티브 주체의 형성," 한국사연구(제153권, 2011), 198-199면.

16) 인권에 대한 이러한 범주화는 이상돈, 인권법(세창출판사, 2005), 231면 참조; 또한 이준일은 '생성 중인 인권'과 유사한 의미에서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홍문사, 2007), 433면 참조.

코스트 기억연구들에서는 유태인 행위자를 '악 앞의 무력한 피해자'로만 다루는 반면, 이스라엘 민족주의 사학의 기억연구들에선 유태인의 자발성과 저항을 강조하려는 데 경도된 나머지 "*그들*이 *우리*를 인간 이하로 보려 할수록 *우리*의 내면적 자긍심이 높아졌다" 식의 공동체적 정체성에 개별 행위자들의 목소리가 묻혀들어 버리게도 됨을 지적한 바 있었다.[17] 그럴 때 피해자의 목소리들은 멜로드라마적인 미학적 서사구조로서 재현된다고 골드버그는 분석한다.[18] 또한 그는 멜로드라마적 내러티브는 증상(symptom)보다는 페티시(fetisch)에 더 가깝다고 설명한다.[19] 증상이 억압된 타자가 출몰하여 거짓된 표면을 교란시키는 예외성이라고 한다면 페티시란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어내기 위해 허구를 구현하거나 내면에 장착하는 것인데, 기억의 문화적 재현은 페티시의 경우처럼 실재하는 고통을 보편적 인권 감수성에 기인한 내러티브 미학으로 환원하여 구현하기 때문이다.[20] 피해자 증언에서 '순결한 우리 누이' '연약하고 무구한 민족의 아이들,' '고결한 정신이 무자비하게 짓밟힌 사람들'처럼 순수화/희생화 담론이 극대화되고 저항담론이 주변화되거나,[21] 혹은 열사나 투사의 저항담론을 낭만화하면서 순수화/희생화 담론으로 그 배경을 꾸미는 내러티브 구성이 그러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로 그러한 고착화된 멜로드라마적 내러티브 안에서 행위자들이 사회적 기억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혹은 지우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지 읽어낼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 본고의 가정이다. 사적 기억은 '우리' 역사, 전승, 전통과 유산에 관한 드라마를 연출하는

17) A. Goldberg, "The Victim's Voice and Melodramatic Aesthetics in History," History and Theory(제48권, 2009), 221~227면.

18) A. Goldberg, 위의 글(주17), 229~230면.

19) A. Goldberg, 위의 글(주 17), 231면.

20) 지젝(Zizek)은 증상과 페티시의 차이를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예로써 설명하기도 한다. 가령 그런 상황에서 '증상'의 경우에는 그 죽음의 기억을 억누르고 최대한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억압된 트라우마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인 반면, '패티시'의 경우에는 그 죽음을 이성적으로는 온전히 받아들이면서도 죽음의 부정(disavowal)을 구현할 만한 어떤 '페티시'에 매달리는 것이다.; S. Zizek, *On Belief* (Routeledge, 2001), 13-14면.

21) 김무용, 위의 글(주 15), 207-208면.

공적 무대와 청중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종종 내밀하고 형언불가능한 기억이 사유되어지는 바로 그 용어들의 발원지가 공적 재현의 언어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22] 기억의 재현에서 강조된 혹은 지워진 기표들을 포착하고, 그 표상이 당시와 이후에 어떻게 재현되는지 추적함으로써 그러한 내러티브 미학 안에 숨겨진 인권 감수성의 균열과 빈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기억과 그 문화적 재현은 재판 증거제공이나 법제정의 추인 그 이상의 역할을 과거와의 조우를 통해 구성되는 "두터운 현재"에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기대를 갖고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의 담론화와 그 기억의 재현을 읽어보고자 한다.

Ⅲ. 형제복지원 담론화에서 '부랑인'의 기표

1. 내무부훈령 제410호와 부랑인 강제수용정책

형제복지원은 1987년 당시 국내 최대 수용인원의 사회복지시설로, 1975년 12월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의거하여 설치되었다.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걸인, 껌팔이 등 건전한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부랑인을 신고, 단속, 수용, 보호하고 귀향 조치 및 사후관리"하여 "도시생활의 명랑화를 기하고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 만전을 기하"(제1장 제1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업무처리지침이다.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기는 하였지만, 포괄적 인구를 잠재적 부랑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 점에서[23] 부랑인 강제수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권력의 경찰법적인 근거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랑인 없는 거리"라는 기치 아래 단속과 분리 정책

22) Popular Memory Group, "대중기억의 이론, 정치학과 방법론(Popular Memory: Theory, Politics, Method)," 윤택림(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아르케, 2010), 183-184면.

23) 동령 제2장 제2절에서 "부랑인의 배회가 예상되는 역, 터미널, 지하도, 육교 등의 우범지역에 지역관리 책임자 또는 인접한 상점주인 등을 지정하여 부랑자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1년 4월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 하에 일체 단속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하라는 대통령 특별훈령이, 또 같은 해 10월 "구걸행위자 수용보호에 있어서 심신장애자와 일반 구걸행위자를 구분 보호하되 …(중략)… 읍·면·동 지소와 파출소 등에 구걸행위자 신고창구를 상설하여 신속한 단속과 수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별도에 훈령이 반포된 것이 이를 반영한다.[24] 아울러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한 거리정화프로그램[25]과 생활올림픽추진단[26] 활동 홍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랑인 시설 격리는 이른바 국가의 경사를 앞두고 환경미화 국민 캠페인과 연계되어 담론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립되어 '성장'한 전국 36개의 부랑인 보호시설들 가운데 하나가 형제복지원이었다.[27] 1965년 7월 부산시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아 국가 지원으로 보육원을 운영하던 설립자 박OO은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발령되던 해,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28]을 맺고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증축하였다. 위의 특별훈령에 의거하여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부랑인 선도사업 복지법인에 대규모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29] 형제복지원은 적게는 1700여 명에서 많게는 3900여 명의 부랑인들을 수용하여 매해 18~20억 원대의 국고지원을 받았다.[30]

24)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84면.

25) "88올림픽 등에 대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국민들의 불쾌감을 없애기 위해 …(중략)… 재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보사부, 도시의 부랑인이 없어진다," 매일경제, 1981.11.21.)

26) 생활올림픽추진단은 식품위생반, 환경위생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되는 생활올림픽 지원사업본부를 두고, 부랑인보호 등을 점검함으로써 "양 대회를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생활올림픽추진단 구성," 매일경제, 1986.2.17. 및 "88생활올림픽 추진", 경향신문, 1986.4.24 참조.

27) 이 중 시립시설이 5개, 종교단체시설이 10개(천주교 8, 기독교 1, 불교 1)이며, 나머지 21개소는 사회복지법인(기독교계 2, 원불교계 1 포함)이다; "부랑인시설 현황," 경향신문, 1987.2.17.

28) 이에 대해서는 내무부훈령 제410호 제4장 제7절 제2항 "위탁경영에 관한 규정" 참조.

29) "인권말살의 현장, 부랑인수용소," 월간 말(3월호, 1987), 23쪽.

30) "국민훈장 받은 평통위원 형제복지원장 박OO은 누구인가," 동아일보, 1987.2.4.

형제복지원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가 1982년에 소위 현지취재를 바탕으로 제작·방영되기도 했었던 걸 미루어보면[31] 당시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1987년 이전까지는 형제복지원 관련 언론 보도기록을 —원장의 훈장표창에 관한 단신기사 외에는[32]—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되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1월 울산지청의 한 검사가 우연히 울주 야산에서 형제복지원 소속 수용자들이 강제노역을 하던 작업장을 목격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였다.[33] 수사 과정에서 원장의 개인 초지조성사업에 원생 180여 명이 강제 취역되었던 사실과 강도 높은 노동과 폭행이 자행되는 과정에서 구타당해 숨진 원생을 병사로 위장한 채 불법 매장한 사실도 밝혀지게 되었다.[34] 이어진 검찰 압수수색과 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단[35]의 현장조사를 통해 원장 개인금고에 보관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비롯하여 복지원의 수용실태와 운영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내무반, 소대장, 중대장 등 군대식 조직편성과 상습적인 구타·기합, 형제복

31) "MBC TV가 의욕적으로 기획한 수요드라머 「탄생」"은 부산시 북구 주례동에 있는 형제복지원부설 부랑아임시보호소를 무대로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인간애를 거부하는 비뚤어진 밑바닥 인생의 실상을" "현장취재를 통해 실감 있게 구성한" 작품으로, 연출자와 배우가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그곳 원생들과 이틀밤을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고 보도되었다.; "수요드라머 새로방영 M-TV서 3일부터," 경향신문, 1982.10.30.

32) "장애인의 날 포상자 명단," 경향신문, 1981.4.20.; "3명에 훈장수여," 경향신문, 1984.5.11; "새마을지도자에 훈장," 매일경제, 1984.5.11.

33) "나는 울산에 와서 알게 된 어느 사냥꾼의 지프를 타고 꿩이나 한 마리 잡아보려고 산속을 헤매고 다녔다 …(중략)…그 사냥꾼이 지나가는 말투로 몇 마디 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산속에 이상한 작업장이 있다. 인부들이 산을 깎는 작업을 하는데 경비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지킨다. 경비원들이 인부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을 몇 번 보았다. 커다란 개 여러 마리가 인부들을 지킨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중략)… 나는 사냥꾼을 재촉하여 그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작업장이 시야에 들어온 순간 사냥꾼의 말이 사실임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김용원, 브레이크 없는 벤츠(예하, 1993), 13면.

34) 관련된 최초 언론보도는 "복지원 수용자 180명에 강제노동," 중앙일보, 1987.1.17 이었다.

35)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6명의 의원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현장조사를 한 다음 1차보고서를 당에 제출하였다.

지원 공식 기관지에 의거해서만도 12년 동안 513명에 달했던 사망자들의 사망 경위, 사체 처리과정에 대한 의혹,[36] 경찰 · 공무원의 공모[37] 등이 터져 나왔다.

2. 언론보도에서 '부랑인'의 기표

"이OO(32)씨는 '연고가 있고 부랑인이 아닌데도 귀가조치 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하며…." [중앙일보, 1987.2.1]

"이중으로 된 철제문이 있는 정문 위에 '자립으로 국민에게 보답하자'는 글이 커다랗게 씌어져 있다. 이곳은 설립취지와는 달리 연고가 있는 사람과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 임의적으로 강제수용을 자행했다." [조선일보 1987.2.2.]

"이곳은 복지원이 아니라 민간인을 포로처럼 수용하면서 정부지원금을 착취하는 사설교도소입니다. 거리를 방황하는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은 몇 명만 데려다 놓았을 뿐 나머지 사람들은…." [동아일보 1987.2.2.]

"수용자의 70% 이상이 정상인으로 수용부적격자였다." [경향신문 1987.2.3.]

(강조표시: 인용자)

위에 발췌하여 인용한 기사들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된 각 언론사의 보도이다. 주지하듯, 이 기사들은 서두에서 매한가지로 '부랑인 아닌 사람들도 수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연고가 있는 이'(중앙일보, 조선일보), '능력 있는 사람'(조선일보), '민간인'(동아일보), '정상인'(경향신문)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까지 그곳에 섞여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당시 큰 사회적 충격과 공포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관련기사가 신문의 정치면

36) 형제복지원사건 조사단에서는 "사체 중 상당수는 1구당 3백만~5백만 원씩 의과대학 실험용으로 팔려갔다는 정보도 있어 이에 대한 진상을 추가조사 중"이라 밝혔다; "12년 동안 513명 숨졌다," 동아일보, 1987.2.2.

37) 경찰의 경우 단속기간 혹은 특별단속기간에 근무 평점을 올리기 위해(구류자 2-3점, 부랑인시설 입소자 5점) 강제 수용절차를 임의로 자행하였을 것이 의심되고, 특히 형제복지원 측에서는 사람수에 따라 국가보조금을 받기에 경찰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식의 공모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게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단의 예상이다.;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 제1차 보고서(1987), 16면.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실).

과 사회면을 채우고 TV 뉴스 프로그램의 첫 꼭지로 보도되던 연일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서술이다.

가령 동아일보의 경우 2월 2일자 3면("부랑인선도 악용한 생지옥"), 11면("12년 동안 513명 숨졌다", "나는 끌려왔다", "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도 한명 맞아 숨져")에서, 2월 3일자 1면("복지원 실태조사", "복지원사건 국회에서 다뤄야"), 2면("살상원이 된 복지원"), 5면("꽁보리밥 먹고 12시간 노동"), 10면("근신소대 둬 무자비한 체벌", "부랑자 수용시설 5백명 내로 규제"), 11면("작년만 95명 숨져 시체 상당수", "형제복지원 부설 정신요양원 국고 등 2억 7천만원 지원")에서, 그리고 2월 4일자 1면("정부인권특위 신설", "복지원 다룰 국회소집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5면("행정감독부재의 비인간지대"), 10면("국민훈장 받은 평통위원 형제복지원 박OO은 누구인가"), 11면("부랑인 내무부규정 모호", "연기군 수용소 백명 불법수용")에서 "'나는 걸인이 아니다'고 설명했으나 부랑아로 몰려 형제복지원에 끌려가 생지옥 같은 강제노역을 당하"[38]는 경우처럼 '멀쩡한 사람'[39]이 부랑인들과 함께 수용되었음을 강조하여 재현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2월 4일자 방송도 "사회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로 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처럼 언론보도에서 정부보조금 횡령 및 국가의 관리감독 미비와 더불어 경악스러운 문제로 그려졌던 것은 강제수용 자체가 아니라 부랑인 수용기준의 포괄성과 임의성이었다.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으로 규정하는 내무부훈령 제410호 제2장 제2절에 대해서도 "부랑인과 부랑인에 준하는 자의 범위가 넓고 애매할 뿐 아니라 수용자에 대한 강제격리수용의 판정을 행정기관 또는 경찰, 심지어는 수용소경영주가 임의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40]는 점이 비판되거나, "껌팔이 등이 행인들에게 치근거리거나 강매를 할 때는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부랑아의 범주에 넣어 수용까지 하는 것은

38) "꽁보리밥 먹고 12시간 노동," 동아일보, 1987.2.3.
39) "근신소대 둬 무자비한 체벌," 동아일보, 1987.2.3.
40) "인권말살의 현장 부랑인 수용소," 월간 말(3월호, 1987), 24면.

지나치다"는 배제/포섭의 범주, 혹은 "껌팔이를 부랑아로 간주, 수용한다면 암표장수도 마찬가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의 유추해석이 문제되었던 것이다.[41] 아래의 기사발췌에서 확인되듯이, 당시 대책논의도 규문해석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대상수용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과 부랑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 "보사부는 4일 정상적인 사람이 부랑인으로 취급돼 부랑인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용시설 입퇴소여부를 심사하는 '분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용규모도 500명 이하로 제한하기 했다 …(중략)… 전국 53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 직접 정밀감사를 실시, 수용자들에 대한 기술 및 정신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동아일보, 1987.2.5.]

이처럼 부랑인을 격리하여 시설에 수용하는 자체가 아니라 억울하게 수용되는 경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은 수용자의 표지는 무엇인가? '연고가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 '민간인', '정상인', '멀쩡한 사람' 등으로 호명되는 이들과 반대짝에 놓인 부랑인은 어떠한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가? 여기서 '부랑인'이라는 기표의 표상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3. 비/부랑인으로 '피해자를 새겨넣기(marking the victim)'[42]

한국 사회에서 부랑인 표상의 계보는 식민지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노동할 능력이 있지만 노동하지 않는 자라고 간주된 자',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자들'을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라 검거·단속했는데, 이 단속을 통하여 '부랑자'라는 하나의 범주로 엮어진 집단이 탄생하였다.[43] 초기의 부랑자 표상은 가난이 아닌 도박과 매음, 유흥과 태만 등 조

41) "부랑인 내무부 규정 모호," 동아일보, 1987.2.4.

42) 이 표현은 골드버그가 자신의 논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한 기표에다 아로새겨넣어 궁극적으로는 주체와 그 기표 사이의 간극을 없애려는 기획'을 설명하면서 사용한 "marking the victim as…"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A. Goldberg, "Trauma, Narrative, and Two Forms of Death," Literature and Medicine(제25권 제1호, 2006), 124면 참조.

선 부호가 자제들의 도덕적 타락과 풍기문란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거리 기숙이라는 표지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년대 중반 이후 걸식아동, 유랑아동, 신원미상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도시로 유입된 거주지 없는 이촌민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부랑자는 급증하는 빈민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의미 변환을 하게 되었다.[44] 사회통제 및 인구통치 목적으로 부랑인들을 분리수용하는 시설이 경성에 들어서게 된 것도 이 시기였다.

해방 후 50년대 부랑인 담론은 고아, 기아, 혼혈아와 더불어 '부랑아' 수용보호와 '방랑아' 발본색원에 맞추어졌다.[45] 또한 "겨울철의 동사자 예방과 우범자들의 선도 및 올림피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가두정비"[46] 등의 문구가 시사하듯 60년대 이후 부랑인 주체는 보호·선도의 객체로, 공적 공간에로부터 격리시설로 배제되어 관리될 존재로 대상화되었다.[47] 특히 박정희 시기 부랑아정착사업과 산업전사 만들기의 기획으로 부랑인은 사회에서 청소해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국토개발에 동원될 산업일꾼으로 개조되어야 할 중간적인 몸이 되었다.[48]

이처럼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제정되기 이전과 이후를 관통하는 '부랑인'의 표상은 질병-범죄-치안의 계열체로 짜여졌으며, 건전사회 기표와 대립되는 지저분하고 위험한, 치워져야 할 존재로 각인되어 왔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해외관광객을 위한 도시 이미지 정화사업을 추진하던 중 부랑인 단속이 '주요지역의 악취제거'와 동일한 층위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49] 건전-안전-명랑사회의 기표와 부랑인 기표 사이의 이러한 명징한 이항대립은 특히 80년대 국가권력 언어의 정수에 닿아 있으며, 그 개념적

43) 예지숙, "일제 하 부랑자의 탄생과 그 특징," 한국사연구(제164호, 2014), 29-31면.
44) 유선영, "식민지의 스티그마 정치," 사회와 역사(제89집, 2011), 65면.
45) 김아림, "5·16군정기 사회정책 -아동복지와 '부랑아'대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제82호, 2011), 334-336면.
46) "모두 736명," 경향신문, 1964.10.8.
47) 정근식, "노숙인 담론과 제도의 역사적 변동," 구인회(편), 한국의 노숙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84-385면.
48) 김아림, 위의 글(주 45), 360면.
49) "생활올림픽추진단 구성," 매일경제, 1986.2.17.; "'올림픽 환경' 밝고 깨끗하게," 동아일보, 1998.9.13.

스펙트럼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부랑인범주는 사회 내의 다수 구성원들과 변별되는 자질 및 행동양식을 지닌 일부에게 낙인처럼 부여된 사회적 스티그마(stigma)이다.[50] 이는 사회 구성원 중 특정한 일부에게 낙인처럼 부여된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서열적인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하여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데 동원되는 정체성 관리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럴 때 비부랑인 수용자들은 '부랑인으로 몰린 억울한 존재'로서의 피해자로, 부랑인 수용자들은 적절한 교화와 보살핌을 받지 못한 '애처로운 존재'로서의 피해자로 각각 새겨질(marked) 것이다. 이러한 구도 안에서는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부랑인을 사회에서 추방하여 벌거벗은 생명(bare life)으로 기입하는 권력의 폭력적 본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다만 비부랑인을 부랑인 범주에 임의적으로 우겨넣는 권력 현현으로서의 폭력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 아래에 발췌한 좌담과 사설이 이를 재현해 보여주고 있다.

"일부 부랑인 수용시설은 수용자를 학대하며 오히려 운영자의 치부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드러났지만 사실 부랑인을 수용해 선도기능을 하는 이런 시설은 복지측면이나 사회 안정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임엔 틀림없어요.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우범자나 또는 집에서 온갖 말썽을 일으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술만 마시면 말썽을 부리는 알코올중독자 각종 질환 등에 시달리는 폐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해 선도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1987.2.6. 좌담]

"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부모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나 아무 곳에도 의지할 곳 없는 무의무탁의 노인들이 그 예이고 그것 외에도 정신질환자, 행동장애자, 알콜약물중독자, 난폭비행자 그리고 일부 범죄자도 그 범주에 속한다 하겠다. 정부는 그들 부적응자 및 무능력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선도하는 재활교육을 통해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토록 해야 할 당연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매일경제, 1987.2.7. 사설]

[강조표시: 인용자]

50) E. Goffman,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Prentice Hall, 1963), 12면 아래.

형제복지원에 파견된 조사단의 보고서에서도 내무부훈령 제410호 제4장 수용 및 보호 제2절(신상기록 카드 작성 비치)에 따른 신원자 색상 별 분류표—신원특이자: 적색; 우범자: 청색; 환자: 황색; 기타: 백색—에서 신원특이자에 관하여 "소위 대공관계 위반자로서 관계기관은 이들의 신상을 밝힐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목하여, 형제복지원 내 11명 이상의 신원특이자가 시국사범 행방불명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하고 있다.[51] 여기서 또한 부랑인 기표가 부당하게 부착된 '비'부랑인으로서의 정치적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용자의 색상 별 분류 자체가 갖는 각인의 폭력성을 문제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역시 그러했다.

4. 배제적 포섭의 인권

앞서 언급한 대로, 수사에 착수했던 울산지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동의를 받아 형제복지원 압수수색과 원장 및 간부들의 연행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상부의 지시로 구형을 낮추는 쪽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수사를 중단해야만 했다고 담당검사는 술회한다.[52] 1987년 6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6억 8178만 원을 선고받았던 원장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며 1988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형량이 2년 6개월로 줄고 벌금형도 면하게 된다.[53]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특히 특수감금에 관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근거 지운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은 원심판시의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적법한 사회복지시설인 위 형제복지원에 위탁된 부랑인들이고, 동인들을 울주작업

51) 부산 형제복지원사건 신민당 진상조사 보고서(제1차 보고서), 1987, 12, 15, 16쪽. (출처: 국가기록원 자료실.)

52) 김용원, "수사검사가 본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개 단체 공동주관, 2013), 38면.

53)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장의 기숙사에 밤 1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취침시킴에 있어서 그 취침 중에 피고인들이 위 부랑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어떠한 가혹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취침 중 도주하지 못하도록 철창시설이 되어 있는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하여…(중략)…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후략)."[54]

[강조표시: 인용자]

위 대법원 판결은 최근의 형제복지원 사건 재규명 논의에서 부패한 재판부와 보수적 판결의 전형으로 기억되고 재현되기도 한다. 여기서도 주지할 것은, 그러한 정치적 배후와 더불어 법관의 선이해(Vorverständnis)[55] 내부에서 작동하였을 '부랑인'의 기표이다. "부랑아 수용시설의 불가결성은 백 번 인정된다 할지라도"[56]와 같은 전제가 감금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 볼 바 아니어서"라 적시한 법관에게 역시 선이해로 자리 잡고 있었으리라는 것이 위의 판결문 내러티브에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수용자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어쩔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으니 "이들 피수용자를 모두 사회로 내보낼 수는 없으며 곧 정부 측에서 문제점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 알리는 동시에 운영상의 잘못을 고쳐나갈 것"[57]이라던 당시 여당 대표의 발언도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나 보수적 성향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입장과 위치의 차이를 넘어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부랑인' 표상과 그에 근거한 배제적 포섭(exclusive inclusion)의 논리가 함께 얽혀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성지원 사건과 충남 양지원 사건[58] 등이 연이어 담론화되자 정부는 부랑인 시설수용 정책의 법적 근거규정인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59] 그러나 곧이어 내무부훈령 제815호 경찰업무지침 제29절 "보

54) 대법원 1988.11.8. 선고 88도1580.

55) 이 개념에 대해서는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세창출판사, 2005), 31면 참조.

56) "인권파괴의 교훈," 동아일보, 1987.2.17.

57)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 경향신문, 1987.2.3.

58) "연기군 부랑아수용소서도 원생한명 맞아숨져," 동아일보, 1987.2.2.; "연기군 수용소 백명 불법수용," 동아일보, 1987.2.4.; "신민·성지원 서로 고소 검찰철야조사," 경향신문, 1987.2.12.; "성지원의 무차별 폭행," 동아일보, 1987.2.11.

안편"에 의거하여 걸인 부랑인을 단속, 각 시 도 및 시군구사회과에 인계하거나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즉심에 회부할 수 있어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60] 제도상 전혀 문제가 없이 '진정한' 부랑인을 격리수용할 수 있다는 것일 테다.

원장의 형사처벌과 더불어, 문제의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을 개별심사한 후 다른 시설로 분산수용하거나 귀가 조치하도록 한 다음 폐쇄된다.[61]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다른 부랑인시설 수용소에서도 2개월 동안 수용자 가운데 1800여 명이 귀가 혹은 분산수용되었다.[62] 그리고 그해 가을과 이듬해 봄, 아래와 같은 기사가 각각 "민폐부랑인 보호조치", "대구 부랑아 급증 사회문제로"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 서울시는 14일 최근 전환기를 틈타 떼지어 몰려다니며 민폐를 끼치고 있는 부랑인들을 특별 선도키로 했다. 오는 연말까지 계속될 이번 선도기간 중 시는 걸인, 껌팔이, 폐질환자와 구걸행위자와 노숙자들을 발견 즉시 시 산하 부랑인수용소에 보호조치키로 했다.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하도, 육교, 시장, 상가 등 번화가와 터미널, 지하철, 서울역 등 상습구걸지역에서 배회하는 부랑인들을 중점단속할 방침이다. [경향신문, 1987.11.14.]
>
> "요즘 대구역 주변, 지하도 육교 등에서 구걸, 신문팔이, 껌팔이 등을 하는 부랑아(앵벌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난 82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부랑인 선도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돼왔다. 그러나 형제복지원, 성지원 사건 이후 거리에서 구걸, 신문팔이, 껌팔이 등을 하면서 떼 지어 다니는 부랑아들이 부쩍 늘어났다 …(중략)… 이들은 구걸을 한 돈으로 오락실, 만화방, 무허가여인숙 등에서 잠을 자고 있어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1988.1.15.]

59) 그 근거로 i) 부랑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한데다, ii) 빈지게꾼, 거리행상, 성인껌팔이 등 생활능력이 있는 자들까지 부랑인으로 취급, 단속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고, iii) 부랑인단속 수용의 주무부서는 보사부인만큼 보사부가 훈령을 마련,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부랑인규정 폐지키로," 동아일보, 1987.2. 16.

60) "복지원 개선 이때부터다," 동아일보, 1987.2.18.

61) 보사부는 1월 16일 최종적으로 남은 원생 143명 중 병원에 입원한 4명을 제외한 139명을 전국7개 시설로 분산수용시키도록 부산시에 지시하고 형제복지원을 사실상 폐쇄한다; "부산 형제복지원 폐쇄," 경향신문, 1988.1.16.

62) "부랑인 1800여 명 귀가 · 분산수용," 동아일보, 1987.3.26.

이렇듯 배제적 포섭의 인권담론 안에서 보도되고, 조사되고, 재판되고 이내 잊혀지게 된 형제복지원 사건은 26여 년이 지나, 당시 비/부랑인으로 새겨진(marked)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사회적 기억으로 귀환하게 된다. 아래 단락에서 다루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IV.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부랑인'의 기표

1. 피해자 목소리의 내러티브화

1987년 사건 당시, 신민당 조사단이 복지원에 도착하여 무작위로 고른 10명과 면담을 하는 동안 20여 명의 원생들이 잠긴 문을 박차고 회의실로 들어와 비인간적 처우와 입소경위 등을 폭로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63] 그렇지만 수용자들의 목소리는 진상조사와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채택되어 들려지고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컷 형식으로 재현된 목소리도 '억울하게 갇힌 명문대출신 회사원의 경위'라든가 '부모 · 형제 멀쩡히 있는 아이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낸 사연' 같은, 독자/시청자의 감수성에 닿아 정의로운 분노를 불 지피고 안타까움을 자아낼 에피소드에 부합하는 멜로드라마적 내러티브로 편집되어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는 정확한 증거자료의 확보나 감수성에 닿는 "생생한 언어의 채집" 차원에만 구술의 쓰임이 머물러 있는 데서 기인하기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 문제가 당시 공적 관심의 범주 안에 계속 머물 만큼의 공감을 이끌어낼 '미학이 부족'해서일지도 모르겠다.[64]

어쨌든 증언과 사연 속의 이 토막난 목소리들 이후,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63) "부랑인선도 악용한 생지옥," 동아일보, 1988.2.2.

64) 다소 거칠게 표현되기는 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미학이다. 소년은,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진보세력에게 미학적인 쾌락을 제공하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헐벗고 남루하고 억울할지언정 그들에게는 '열사'의 미학이 없다."; 안영춘, "발문: 소년은 그들과 이어진 벼리이다," 한종선 · 전규찬 · 박래군(공저), 살아남은 아이(문주, 2012), 11면.

목소리는 거의 들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 수용자가 월간지에 투고한 고발수기와[65] 수용 기억을 담은 수기집[66] 및 시집[67]이 세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출간된 정도가 전부였다.[68] 형지복지원 사건이 다시금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2012년 11월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기억을 다룬 책『살아남은 아이』가 출간되면서였다. 이 책은 1984년부터 9살의 나이로 누나와 함께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어 1987년에 '사건'이 터지기까지 그곳에 있었던 한종선의 증언집이면서,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그의 이야기에 처음 귀 기울여 그에게 기억을 기록해볼 것을 제안했었던 교수 전규찬과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글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SNS)와 대안언론보도를 통해 이 책이 점차 화제가 되면서 이듬해 1월 형제복지원 사건의 재조명을 위한 첫 모임이 진행되었고, 3월에는「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69]가 개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다가 지난 3월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에서 검토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었다. 이후 부랑인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전반적으로 물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 안을 철회하고 7월 15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발의되었다. 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문이 보여주듯이, 충격적인 '그때 그 사건'으로서의 형제복지원은 이번에는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과거청산의 문제로 다시금 소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65) 김영욱, "고발수기 형제복지원 25시," 월간 엔터프라이즈(9월호, 1988).

66) 김영욱, 형제복지원: 생지옥의 낮과 밤(청사, 1988).

67) 김영욱, 거지여행(참세상, 1988).

68) 다만 한겨레의 신간 소개란에서 다음과 같은 한 단 소개를 찾아볼 수 있었다;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의 현장인 부산형제복지원에 수감되었던 김영욱 씨의 체험고발 수기, 청사 281쪽, 3500원"(한겨레, 1988.12.30).

69) 토론회는 2013년 3월 22일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시의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닌 왜곡된 거짓을 기억하고 있다. 원장이었던 박OO은 합당한 형을 받았을 것이고, 시설은 폐쇄되었고,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아 깨끗이 처리된 역사 속의 사건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70]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은 무엇보다 『MBC 시사매거진』[71]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72] 등 시사고발방송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점화되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에서 지적되었고[73] 형제복지원 대책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듯이,[74] 그러한 관심의 점화는 그러나 일면 극악무도한 원장과 고통받는 희생자들을 대비하며 분노와 연민을 자극하도록 틀지어진 내러티브에 편향된 양상을 보였다. 과거청산이 가해자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데로만 정향되어 국가폭력과 사회적 공모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 하겠다.

70)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87년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 실종자 · 유가족 생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14.3.11.(http://www.youtube.com/watch?v=i-PMZTLceZY).

71)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폭행 · 노역, 형제복지원 감금자들의 26년," MBC 시사매거진 2080, 2013.11.3. 방영.

72) "홀로코스트 그리고 27년-형제복지원의 진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14.3.22. 방영.

73) 발제자 홍성일은 "인면수심의 복지원장과 그 가족들이 누린 호사호식과는 반대로 여전히 상처를 지니고 그 어떠한 사과도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희생자들을 극명하게 대비 …(중략)… 이처럼 역사적 인물을 신화의, 장르의 인물로 바꿈으로써 프로그램은 오히려 사태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는 위험에 빠진다"고 지적하였다.(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69).

74)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의 한종선과 박태길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너무 박OO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과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부족하여 방송을 지켜본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으로서는 다소 유감이었습니다 …(중략)… 그 피해생존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말 못하고 살아왔었는지 그들이 왜 지금에서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아프다고, 괴롭다고, 살려달라고, 세상에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웠습니다."(2014.03.23. 20:03:56 작성).

그렇지만 본고의 지향은 형제복지원 기억의 이러한 멜로드라마적 재현에서 고착화된 가해자/피해자 상의 이항대립이나 소비되는 트라우마의 면면을 찾아내어 비판하는 데 있지는 않다. 그보다는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된 피해자 목소리의 내러티브화(narrativization)에 박혀들어가 있는 부랑인의 기표를 분석하는 데 있다. 그 기표가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과거청산과 특별법 제정 논의에서 여전히 무엇을 '말하지 않'게 혹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지 조금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2. 다층적 자기검열기제와 '말하지 않음'

피해자 증언에서 종종 피해자들은 기억을 말함에 수반될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말하기를 저어하거나, 혹은 자신의 기억을 표현할 맞갖은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하다. 전자가 공식기억과 사회적 공모에서 발로한 억압의 문제로 환원된다면, 후자는 서발턴(subaltern)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낙인에의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상처를 무엇인가로 규정하여 말하고 싶지만 이를 표현할 만한 용어나 담론이 없어서 '못' 하기도 하는 것이다.[75] 먼저 전자, 즉 형제복지원 기억의 문화적 재현에서의 '말하지 않음' 차원부터 짚어보도록 한다.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사건에 관한 주체의 개별적 인식과 경험을 고정된 피해자상으로 고착화할 때[76] 사회가 갖고 있는 공식기억과 당사자의 사적 기억이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에서 개인의 기억은 금기의 기억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는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당사자에게 부지불식간에 선별하게끔 하는 자기검열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령 아래의 형제복지원 수용자 증언들에서 보듯, 거리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 외에도 부모나 친지에 의해 혹은 이웃의 신고로 부랑인 강제수용시설에 보내진 경우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원 측의 연락을 받고도 찾지

75) 이소영, 위의 글(주 11), 277면.

76)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제22권 3호, 2006), 141면; 심영희, "침묵에서 증언으로: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제23권 2호, 2000), 133면.

않거나, 귀가조치 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기억들에 대한 진술도 있었다.

> "나는 아버지가 드디어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다고 알고, '아버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술 먹고 길에서 잠들었다 잡혀 왔다'라고 말했다 …(중략)…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다. 이제 이곳을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괴롭혔다."[77]
>
> "제가 마음을 잡지 못하고 가출을 하니까 아버지는 저에게 '거기가서 정신 차리고 오라'고 다시 형제복지원으로 보냈습니다 …(중략)… 저는 아버지가 금방 날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습니다."[78]
>
> "왜 집에는 들어가지 않냐고 물으니 4년을 형제원에 있다가 나왔더니 집이 이사를 하고 없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처럼 형제원에서 나와서도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후략)."[79]

하지만 이 목소리들은 "구두닦이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지만 그래도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복지원이라는 곳에 들어간 이후, 이들의 삶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80]와 같이 멜로드라마화된 내러티브와는 충돌하는 사적 기억이 된다.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또한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순수하거나 무고하거나 억울한 희생으로 재현되지 않을 경우 법적 진실규명과 피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대항담론은 사회적 기억의 방향이 예정된 상태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내러티브화되기도 한다.[81] 과거청산이라는 기억의 현재화 과정에서

77) 한종선, "선아, 우리 연두다리 안 갈래," 한종선 · 전규찬 · 박래군(공저), 살아남은 아이(문주, 2012), 76면.

78) 박태길, "형제복지원의 기억,"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3), 12면.

79) 박태길, 위의 글(주 78), 16면.

80)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폭행 · 노역, 형제복지원 감금자들의 26년," MBC 시사매거진 2080, 2013.11.3.

81) 가령 정점의 원장과 아래의 원생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를 규율과 감시로 메우는 역할을 하였던 중대장/소대장/조장/감시원 등은 형제복지원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

피해자의 목소리를 '순수하게 희생된 국민'이라는 틀에 맞추면서 다른 상처의 기억들은 주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82]

3. 상징죽음과 '말하지 못함': "나는 부랑인이 아닙니다"

한편 기억의 문화적 재현에 있어 본고의 주된 관심은 후자, 즉 '말하지 못함'의 층위이다. 이는 흔히 탈식민주의에서 서발턴의 개념으로 논의되곤 한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질 때, 우리는 이를 설명할 맞갖은 단어와 표현을 찾아 자신의 말로써 세계를 설명하고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해가려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주체구성의 장소가 된다.[83] 그런데 스스로를 드러낼 언어를 갖지 못할 경우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의미화되어 들려지지 못한 채 침묵 안에 갇히게 된다. 이처럼 대변과 재현과정에 포섭되지 못하는 잉여가 '서발턴의 말하지 못함'이다.[84] 그런데 이와 더불어, 자신에게 들러붙는 기표에 저항할 적합한 언어를 찾지 못하는 데서 오는 말하지 못함의 차원 또한 존재한다. 아래의 예들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다고 보인다.

"부랑자가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85]

해자였다.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되기 이전에도["…완장을 찬 중대장이 나타났다. 소대장이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벌벌 떨며 거수경례를 붙인다. 우리들 앞에 의기당당하게 군림하던 그도 중대장 앞에서는 새발의 피가 아니라 먼지였다"; 김영욱, 위의 책(주 66), 1988. 43쪽], 그리고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그러했지만("그곳에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니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신문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태길, "형제복지원의 기억,"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 16면), 이들의 기억은 문화적 재현에서 비껴나 있다.

82) 김무용, 위의 글(주 15) 213-214면.

83) N. Strejilevich, "Beyond the Language of Truth," Human Rights Quaterly(제28권, 2006), 706면.

84) 가령 다음의 인용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나 말 못 하는 아버지와 누나는 누가 대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모임 대표발언," 87년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 실종자 · 유가족 생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2014.3.11).

85) 김OO, 형제복지원 피해자 증언대회, 2014.4.8.(http://www.youtube.com/watch?

"그렇게 되기 전 나 역시 아니 우리 가족 역시 당신들과 같은 가정이 있었던 일반 사람이었다."[86]

"난 성실한 이 사회 구성원이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쟤들 부랑아다, 하는 낙인이 찍힌다면 현재 삶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골드버그(Goldberg)는 홀로코스트 피해자의 목소리와 그 재현에 관한 자신의 연구에서 주체에 부착된 기표로 인한 상징죽음(symbolic death)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자의 몸부림을 분석한 바 있다.[87] 트라우마는 주체가 실재(the Real)와 가까이 마주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이 조우 안의 무언가가 주체에게는 과잉(excess)으로 경험된다. 트라우마 안에서 형성되었으나 의미구조내부로 통합되지 않은 이러한 과잉은 증상(symptom)으로 귀환하여 주체를 강박에 가두어둔다. 이러한 트라우마적 조우가 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의미의 총체적인 배전망(grid)의 잠재적 소멸이다.[88] 요컨대 주체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문화적, 역사적, 혹은 개인적 맥락이 소거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피해자는 말할 수 없거나 그의 발화는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데, 이것이 주체가 경험하는 상징죽음이다.[89] 이때 주체에게 각인되는 기표는 대단히 강력해서, 피해자 내러티브에 스며들고 때때로 이를 지배하기도 한다.[90]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게 있어서는 '부랑인'이라는 기표가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피해자 목소리의 내러티브화에서 "나는 부랑인이 아닙니다"가 반

v=SIehW273EEg).

86) 한종선, "선아, 우리 연두다리 안 갈래," 한종선 · 전규찬 · 박래군(공저), 살아남은 아이(문주, 2012), 76쪽.

87) A, Goldberg, 위의 글(주 42), 133면.

88) A, Goldberg, 위의 글(주 42), 134면.

89) 이는 주체를 에워싼 상징질서가 뿌리뽑힐 때, 혹은 사회적 상징체계가 근절될 때 주체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설명하는 라캉(Lacan)의 개념이다. 라캉은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Antigone)를 예로 들어 상징죽음을 설명하는데, 안티고네가 테베의 법을 어기고 상징적 우주 바깥의 동굴 안에 갇혔을 때, "자연적 죽음은 도래를 기다리고 있고 상징죽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닿았다"는 것이다.; J. Lacan, *The Ethics of Psychoanalysis 1959-1960* (W.W.Norton, 1997), 270-291면 참조.

90) A, Goldberg, 위의 글(주 42), 133면.

복되는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안전국가의 운용은 비균질적인 이단자로서의 범법자, 사상불순자, 사회적 문제아, 보균자, 정신병자, 그리고 부랑인의 발굴을 통한 인구분할을 수반한다.[91] 이것은 주체에 각인된 부랑인 기표와 그들의 몸 사이의 간극이 사라지게 함을 목적한다. 그 간극의 사라짐은 주체들이 대면하는 상징죽음의 위험이다. 한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기억의 재현에서는 이러한 상징죽음이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고 있다.

> "출근 좋아하네 …(중략)… 이곳에 들어오면 부랑인이지 사람으로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비렁뱅이 거지들만 모이는 곳이야."[92]
>
>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 여러분은 거지였던 것입니다. 아무 일자리 없이 사회를 배회하며 구걸을 일삼는 것으로 업을 삼아 민폐를 끼쳤던 존재란 말입니다. 즉, 좀 고상한 말로 하면 부랑자, 부랑인이라는 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노인의 말은 나에게 계속 충격적이었다. 민폐를 끼쳤던 거지로 취급받은 내가 큰 대역죄라도 지은 것 같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중략)… 부랑아라는 말은 떠돌아다니는 것이고 결국 부랑자, 부랑인으로 되어 버린 우리들은…(후략)."[93]
>
> "먼지 하나 없이 잘 청소된 부식창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중략)… 부랑인도 아닌 사람을 붙잡아다가 마치 우리들 자신이 거지인 양 착각 속으로 빠지게 만들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와 열을 맞추어 냉동된 고등어대가리 앞에서와 돼지대가리 앞에서 부동자세로 묵념을 올리기라도 하듯 당한 수모는 우리들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드러낸 참혹함이었다."[94]

여기서 우리는 부랑아의 기표가 자신에게 부착되었다는 사실이 당사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보다 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상이군인도 코피 터지는 곳—형제복지원,"[95] "이 팔을 보십시오. 국

91) 전규찬, "짐승들의 우리와 그 바깥 인간의 시간," 살아남은 아이(문주, 2012), 223면.
92) 김영욱, 위의 책(주 66), 27-28면.
93) 김영욱, 위의 책(주 66), 48면.
94) 김영욱, 위의 책(주 66), 69면.
95) 김영욱, 위의 책(주 66), 64면.

가와 민족을 위해 군복무 중 상이군인으로 제대한 원호대상자인 국가유공자입니다,"[96]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상이군인을/ 뜨내기 부랑자로 몰아 세워/몽둥이 찜질이 웬말인가"[97]와 같이 피해자의 내러티브에서는 상이군사와 국가유공자로서의 정체성이 강박적으로 반복 등장하는데, 국가와 사회의 공모 및 방조의 피해자였던 그의 내러티브에서 국가유공자 수사를 반복되는 모습은 "트라우마의 언어는 가해자들의 폭력에 의해 선임된 언어"[98]라는 부르크(Bourke)의 분석을 상기시킨다. '부랑인' 표상이 실제 몸에 점점 더 밀착되어 각인됨에 대한 두려움과 종국에 부랑자로 낙인찍히게 될 불안이 주체의 언어를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부랑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일상에서도 노숙자나 걸인이란 표현은 써도 부랑인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거의 찾기 어렵다.[99] 그렇지만 '부랑인'의 기표가 기입되던 기억이, 그리고 그 기표가 가졌던 문화적 표상에 대한 기억이 피해자들의 언어와 사유에 박혀들어 있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구성 안에서 '주체와 그에 부여된 기표 사이의 차이를 없애는 상징적 실천들로서 주체의 상징죽음에 이르게 하는'[100] 규율권력의 작동을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

V. 나가며: "두터운 현재"의 (재)구성

이처럼 본고에서는 형제복지원 기억의 재현과 과거청산 논의를 '부랑인'의 기표를 통하여 읽어보고자 하였다. 형제복지원이 사건화된 1987년의 언론보도, 사설 · 논평 · 독자투고, 사건조사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안에서 '부랑인'

96) 김영욱, 위의 책(주 66), 193면.

97) 김영욱, "내 방황의 시작인 이곳," 거지여행(참세상, 1991), 93면.

98) J. Bourke, "When the Torture Becomes Humdrum,"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제10호, 2006), 19면; D. Bell, "Introdction: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D. Bell(편), *Memory, Trauma and World Politics* (Palgrave Macmillan, 2006), 9면.

99) 박래군, "형제복지원 사건과 침묵의 카르텔," 한종선 · 전규찬 · 박래군(공저), 살아남은 아이(문주, 2012), 353면.

100) A, Goldberg, 위의 글(주 42), 135면.

의 기표가 무엇을 표상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정상인/비정상인을 가르고 주체를 비/부랑인으로 분리하여 기입하였는지, 거기에 배제적 포섭의 인권담론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먼저 다루었다. 그리고 26여 년이 지나, 당시 비/부랑인으로 기입된 피해자들의 기억의 재현에 그 기표가 어떻게 각인되어 있으며, 무엇을 말하지 않게 또는 못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것이 관련 특별법 제정과 가해자 처벌/피해자 배상/기념의 제도화/기억의 규제의 '법을 통한 과거청산'에 있어 어떠한 참조점들을 제시할 것인가는 본 논문에 이어져야 할 본격적인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인권 감수성에서 발로하는 공감은 과거청산의 사회적 동인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여 정의를 '회복'할 제도적인 틀 마련과 그 시행을 요청한다. 분노와 연민의 공유를 전제로 한 과거와의 조우는 그러나 "사회적 트라우마의 공유를 통한 우리-되기"[101]에 사용되기도 한다.[102] 또한 이러한 분노와 연민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 여실히 보여주었던 악마화된 가해자와 순수하고 연약한 희생자의 이항대립을 극대화하는 내러티브로 포섭되기 쉽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103] 현재 형제복

101) A. You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the Virtual Kind: Trauma and Resilience in Post-9/11 America," A.Sarat (편), *Trauma and Memory: Reading, Healing, and Making Law*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

102) 가령 '홀로코스트에 대한 문화적 기억'을 감성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주체가 유럽적인 정체성을 부여받음을 기억 시민권(memory citizenship)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M. Mälksoo, "The Memory Politics of Becoming European: The East European Subalterns and the Collective Memory of Europ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제15권, 2009) 참조.

103) 사무국장 여준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장에 대한 책임보다 당시의 국가정책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용인했는가가 중요한 문제"(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 93514)임을 지적하고 있고, 피해자대표 한종선도 "언론에 비친 우리들은 '피해자' '아픈 사람들'로만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룰 때 피해자의 아픔만 부각되어서는 안 된다"(형제복지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언론의 역할 토론회, 2014.3.17)고 이야기한다. 공동대표 강경선 또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형제복지원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야만성'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http://www.youtube.com/ watch?v=i-PMZTLceZY).

지원 기억의 재현에서도 그러한 가해자/피해자 이항대립과 '나쁜 놈들과 전선을 그으며 하나 되는 우리'의 양상들이 포착되곤 한다.[104] 이처럼 '그들'에 대한 분노 혹은 연민의 감수성으로 구성되는 "두터운 현재"를, 본고에서 살펴본 '부랑인'의 기표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 다르게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무부훈령 제410호가 부착한 '건전한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부랑인'의 기표는, 앞서 보았듯이 단지 법령과 이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한 이들의 사유 및 언어에만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을 연일 폭로하던 언론보도에서, 비판적인 논조의 사설 · 컬럼에서, 야당의 사건진상 조사보고서에서, 그리고 판결문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에 전제된 '정상인이 부랑인으로 끌려가는 건 부정의하다'와 '부랑인이 마땅한 보호 대신 학대를 받는 것은 반인권적이다'라는, 정상인 피해자 대 부랑인 피해자의 정체성 분리는 사건화된 형제복지원의 이전과 이후를 넘나들며 기억의 재현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그때와 지금을 가로지르며 우리 안에 각인된 '부랑인'의 기표를 들여다보려 할 때, 그들에 대한 분노와 연민을 넘어 공모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한 우리의 내면 또한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일반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부랑인 소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던 1988년의 어느 목소리[105]와 조우하는 '지역 노숙인 시설 설립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지금 여기의 우리'가, 사회적 기억의 "두터운 현재"를 다시금 다르게 구성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

104)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형제복지원 편이 방영된 후 시청자게시판에 올라온 반응들의 대다수가 아래와 같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였다; "형제복지원원장 당신은 개보다도 못한 인간인데 어디서 인권운운이야. 인권은 너 같은 개보다도 못한 너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야"(이OO, 2014.03.23 06:23:48 작성); "형제복지원 원장이라는 인간 3대까지 탈탈 털어서 못살게 해야지 …(중략)… 가족들까지 탈탈 털고 부당하게 수령한 거 다 빼앗아야 한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제 나이 들어 힘없고 갈 때 되니까 아버지 인권 챙기는 아들도 뻔하다"(유OO, 2014.03.23 06:23:06 작성).

105) 이 독자투고문에서는 "복지원생들을 무더기로 석방함으로써 부산의 여러 지역이 부랑인들의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다"며, 정부가 "억울하게 복지원에 끌려간 사람은 석방하고 알코올중독 · 정신이상 · 가정파괴자 등 부랑인들을 수용할 시설을 마련하고 교화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란: 부랑인 수용시설 없이 용두산공원에 모여 시민들 혐오감…새 삶 찾을 대책 마련을," 한겨레, 1988.7.28.

Abstract

The Signifié of *Vagrant* Attached by Law and Its Effects: Representation of Remembrance on Hyungjae Welfare House and the Discourse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Soyoung Lee

This article aims to deal with the signifié of vagrant that legal mechanism has attached, and its effect in the construction of social memory. While focusing on the case of human rights abuse at Hyungjae Welfare House (Hyungjae Bokjiwon) that had been revealed to the public in 1987 and referred to as Korean Auschwitz or Korean Holocaust, the article tries to rais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how did legal mechanism of the Instruction (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enacted in 1975) constitute dominant representation of vagrant during 70s and 80s, and in what forms has such dominant representation been stamped and carved into the voice of victims today as well as into the cultural remembrance of Hyungjae Welfare House?

The research starts by problematizing the tendency revealed in majority of media coverage in 1987, that they had focused not on the ills of involuntary confinement itself but solely on the fact that many 'healthy and sound' citizens were also confined there by being falsely taken as vagrants. Through examining various cultural representations —media coverage including news reports, editorials and correspondence columns, investigation report by the opposition party, and the sentencing by Supreme Court— this research aims to figure out what would have been the signifiant of the signifié vagrant at the time, that was placed at the antipodes to the signifiant such as 'heathy and sound citizen', 'normal

person', 'man in the straight lane' etc. Moreover it illustrates how the dominant representation of Instruction (Anweisung)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No.410 affected in drawing a binary code between normal/ abnormal and in segregating each performers into non/vagrant subject.

Besides, this research aims to demonstrate the effect that such signifié of vagrant has on the representation of victims' remembrance today, after 26 years have passed from then. In other words the article analyses how, in the Hyungjae Welfare House memory which returned to the public discourse as an object of '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by means of law', the (effect of) vagrant signifié is carved into the victims' voice and makes un/conscious repetition of non/vagrant identity in their narratives, such as "I was not a vagrant, but a student," "I was just an ordinary citizen" or "I was a diligent member of this society."

색인어

'과거와의 조우(coming to terms with the past)', 부랑인(vagrants),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배제적 포섭(exclusive inclusion), 피해자 목소리(voice of victim), 지배적 재현(dominant representation), 상징죽음(symbolic death)